# 2023년도 제1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 회의 개요

- o 일 시: 2023. 5. 23.(화요일), 10:30
- o 장 소: 대면 심의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헌영(분과위원장), 김민아, 한승원, 홍지만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09)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b>의결안건〉</b>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분과위원장

#### Ⅱ.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71건(안건번호 제2023-42336호~4390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42336호 출판물을 중고로 판매하면서 PDF파일을 함께 제공하는 사안으로, 본건 게시물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물 책 판매로 이를 넘어서는 범위의 독자적인 불법복제물 거래는 발견되지 않는 점, 구매자에 의한 불법복제물 유포의 가능성 등 향후의 불확실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42337호~42338호는 원저작물을 편집한 영상을 게시한 시안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법 시장의 대체가능성을 인정하 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42339호는 일반인이 촬영한 공연 영상을 게시한 시안으로, 해당 공연의 내용 및 특성에 비추어 합법 시장을 확인하거나 대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42340호~42345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42346호~42351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42352호~42372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42373호~42400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 견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42401호~42417호는 블로그,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4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17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10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주요 권리자는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 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 82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 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 3-4233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책 판매시 PDF 파일을 같이 제공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기존 PDF를 판매 사안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게시물 내용을 보면, 실물 책 구매시 PDF가 있으면 같이 보내준다는 것임. 즉 따로 팔지 않고 책을 판매할 때만 같이 주는 것임.
- E 위원: 해당 PDF는 책을 구매하면 원래 주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권리자가 제작한 것은 아니고, 게시자가 업체를 통해 스캔한 것임. 사실 이러한 스캔 자체는 저작권법 제30조의 범위를 넘어서 저작권침해임. 그러나 그 사실이 정황상 추측된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물에 시정권고를 하기는 어려움.
- D 위원: 책 한 권을 팔면 그 사람에게 하나의 PDF만 전달되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E 위원: 중고책이라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PDF가 어떻게 유포되는지 에 관한 부분이 마음에 걸림.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42336호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 격을 구함.
- B 위원: 중고책 거래가 주가 되는 것으로 보여 부결 의견임.
- A, D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E 위원: 저는 가결 의견임. 음원 등 다른 불법복제물의 심의례에 비추어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PDF 판매에 대한 일반적인 안건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
- B 위원: PDF를 여러 명에게 판매하느냐, 아니면 딱 한 번 판매하느냐의 차이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중고책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개념으로 PDF를 함께 주는 것으로 보임.
- E 위원: '★★★★★★★★★★★ '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책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PDF가 주 목적이 아님. 댓글을 보면 PDF보다 책 자체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이 보임. 책을 사야만 P DF를 준다는 것은 한 번씩만 파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실물책과 함께 거래하는 이상 여러 번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
- E 위원: 최소한 게시자가 PDF를 만들었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업체를 통해 스캔 PDF를 만든 것은 사적 복제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저작권 침해가 됨.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심의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움.

- E 위원: 물론 그 부분은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표결 결과 가결 1인, 부결 3인으로 안건번호 제2023-4233 6호는 본건 게시물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물 책 판매로 이를 넘어서는 범위의 독자적인 불법복제물 거래는 발견되지 않는 점, 구매자에 의한 불법복제물 유포의 가능성 등 향후의 불확실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 3-42337호~4233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이용 중인 사안임.
  -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42337호~42339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D,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42337호~42338호는 원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법 시장의 대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3-42339호 해당 공연의 내용 및 특성에 비추어 합법 시장을 확인하거나 대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 3-42340호~4234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만화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광고 수익이 있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링크게시물 및 원천게시물인 해외 블로그에 모두 광고가 부착되어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42340호~42345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42340호~4234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 3-42346호~4235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42346호~4235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42346호~4235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 3-42352호~4237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 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42352호~4237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42352호~4237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 3-42373호~4240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42373호~42400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

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42373호~4240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 3-42401호~42417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42401호~4241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42401호~4241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

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42418호~4390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방송, 영화, 음악, 만화/웹툰, 게임, SW, 음악 등을 웹하드 등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확인해 주시기 바람.

('유랑지구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42517호('유랑지구2') 는 2023.05.10.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50포인트에 판매중임.

('리턴 투 서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43157호('리턴 투 서울')는 2023.05.03.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230포인트에 판매중임.

('종이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43373호('종이달')는 2023.04.10. 공개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80포인트에 판매중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 건번호 제2023-42418호~4390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 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42418호~4390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42336호, 제2023-42337호~42339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3-42340호~42345호, 제2023-42346호~42351호, 제2023-42352호~42372호, 제2023-42373호~42400호, 제2023-42401호~42417호는 기결하고 안건번호 제2023-42418호~4390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30.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위 한승원

## 위원 홍지만